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명칭을 정보화관리팀으로 변경하고, 세무서 체납징세과 명칭을 징세과로 변경하며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질의·회신”을 “질의·회신(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추천”을 “추천, 의무이행 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전산관리팀”을 “정보화관리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전산관리팀·개발지원1팀”을 “부가가치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정보화관리팀·개발지원1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관리팀장”을 각각 “정보화관리팀장”으로 한다.

제29조의3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7조제4항제1호·제4호·제8호·제11호”를 “제27조제4항제1호·제4호·제8호·제9호·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6. 제27조 제4항 제1호·제4호·제8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7.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제30조제2항 중 “체납징세과 · 세원관리과 · 부가소득세과 · 부가가치세과 · 부가가치세1과 · 부가가치세2과 · 소득세과 · 재산세과 · 재산세1과 · 재산세2과 · 법인세과 · 법인세1과 · 법인세2과 · 재산법인세”를 “징세과 · 세원관리과 · 부가소득세과 · 부가가치세과 ·

부가가치세1과 · 부가가치세2과 · 소득세과 · 재산세과 · 재산세1과 · 재산세2과 · 법인세과 · 법인세1과 · 법인세2과 · 재산법인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징세과장”을 각각 “징세과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26명”을 “27명”으로, “세무주사보 3명”을 “세무주사보 4명”으로, “전산주사보 3명”을 “전산주사보 2명, 세무서기 1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107명(6급 47명)”을 “108명(6급 48명)”으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세무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제30조제2항 관련)

구분	세무서	과
1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1과, 재산세2과, 법인세1과, 법인세2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2	영등포세무서	징세과, 부가가치세1과, 부가가치세2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1과, 법인세2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3	성동세무서	징세과, 부가가치세1과, 부가가치세2과, 소득세과, 재산세1과, 재산세2과,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4	역삼세무서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1과, 법인세2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5	반포세무서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1과, 재산세2과,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6	부평세무서	징세과, 부가가치세1과, 부가가치세2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7	종로세무서, 용산세무서, 마포세무서, 강서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동작세무서, 동대문세무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동안양세무서, 안산세무서, 평택세무서, 분당세무서, 인천세무서, 고양세무서, 천안세무서, 북대전세무서, 북광주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북대구세무서, 부산진세무서, 창원세무서, 김해세무서, 제주세무서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8	중부세무서, 성북세무서, 서대문세무서, 은평세무서, 금천세무서, 관악세무서, 중랑세무서, 도봉세무서, 노원세무서, 안양세무서, 동안산세무서, 수원세무서, 동화성세무서, 성남세무서, 이천세무서, 남양주세무서, 구리세무서, 시흥세무서, 용	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세무서, 계양세무서, 서인천세무서, 남동세무서, 연수세무서, 김포세무서, 부천세무서, 남부천세무서, 의정부세무서,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세종세무서, 청주세무서, 동청주세무서, 광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서, 광산세무서, 전주세무서, 목포세무서, 순천세무서, 동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수성세무서, 포항세무서, 구미세무서, 서부산세무서, 수영세무서, 해운대세무서, 북부산세무서, 동래세무서, 금정세무서, 울산세무서, 동울산세무서, 마산세무서	
9	화성세무서, 양산세무서	징세과, 부가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10	남대문세무서, 동수원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 기흥세무서, 춘천세무서, 원주세무서, 강릉세무서, 포천세무서, 동고양세무서, 파주세무서, 광명세무서, 충주세무서, 아산세무서, 군산세무서, 북전주세무서, 익산세무서, 여수세무서, 경산세무서, 경주세무서, 중부산세무서, 부산강서세무서, 진주세무서	징세과,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11	공주세무서, 논산세무서, 서산세무서, 정읍세무서, 나주세무서	징세과,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납세자보호담당관
12	홍천세무서, 영월세무서, 삼척세무서, 속초세무서, 영동세무서, 제천세무서, 보령세무서, 홍성세무서,	징세과, 세원관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예산세무서, 남원세무서, 해남세무서, 영덕세무서, 안동세무서, 김천세무서, 상주세무서, 영주세무서, 거창세무서, 통영세무서	
--	--

별표 6의2 중 총계 “922”를 “923”으로 하고, 세무주사보 “162”를 “163”으로 하며, 전산주사보 “67”을 “66”으로 하고, 세무서기 “31”을 “32”로 한다.

별표 10 중 세무서기보 “3,725”를 “3,739”로 하고, 전산서기보 “36”을 “43”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160”을 “159”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14”를 “1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40”을 “321”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412”를 각각 “20,413”으로 하고, 세무주사 “4,308”을 “4,309”로 하며, 세무서기보 “3,725”를 “3,739”로 하고, 전산서기보 “36”을 “43”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160”을 “159”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14”를 “1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40”을 “321”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전산관리팀”을 “정보화관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관리팀장”을 “정보화관리팀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전산관리팀”을 “정보화관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관리팀장”을 “정보화관리팀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보 1명, 세무서기 1명)과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징세법무국) ①·② (생략)	제6조(징세법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u>질의·회신</u>	7. ----- ----- <u>질의·회신</u>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법인납세국) ① ~ ③ (생략)	제8조(법인납세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익법인 지정 <u>추천</u> 및 지정 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2. ----- <u>추천</u> , 의무이행 <u>점검</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중소기업 세무컨설팅</u>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u>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u>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생 략)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성실납세지원국에 부가가치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 및 전산관리팀을 둔다. 다만, 대전지방국세청에는 부가가치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전산관리팀·개발지원1팀 및 개발지원2팀을 둔다.	② ----- ----- -- <u>정보화관리팀</u> ---. ----- ----- 부가가치세과·소득재산세과·법인세과·정보화관리팀·개발지원1팀 ----- -----.
③ 성실납세지원국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산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 <u>정보화관리팀장</u>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전산관리팀</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u>정보화관리팀</u> 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② (생 략)	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5의4. 삭제	
<신 설>	6. 제27조 제4항 제1호·제4호·제8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 설>	7.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
1. 제27조제4항제1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1. 제27조제4항제1호·제4호·제8호·제9호·제11호 ----- -----
2.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법칙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0조(세무서) ① (생 략)	제30조(세무서) ① (현행과 같음)

②세무서에 채납징세과·세원관리과·부가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부가가치세1과·부가가치세2과·소득세과·재산세과·재산세1과·재산세2과·법인세과·법인세1과·법인세2과·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③ (생략)

④채납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채납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1. ~ 26. (생략)

⑤ 삭제

⑥ ~ ⑫ (생략)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②----- 징세과·세원관리과·부가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부가가치세1과·부가가치세2과·소득세과·재산세과·재산세1과·재산세2과·법인세과·법인세1과·법인세2과·재산법인세-----

③ (현행과 같음)

④징세과장-----
----- 징세과장-----
-----.

1. ~ 26. (현행과 같음)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26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9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세무주사보 3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3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7명(6급 47명, 7급 3명, 8급 57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 ⑧ (생략)

----- 27명-----

----- 세무주사보 4명, -----

----- 전산주사보 2명, 세무서기 1명,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08명(6급 48명)-----

-----.

⑤ ~ ⑧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전산관리팀</u>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u>전산관리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천지방국세청 <u>전산관리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u>정보화관리팀</u>----- --. ② ----- <u>정보화관리팀장</u>----- -- <u>정보화관리팀장</u>----- -----.	관리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천지방국세청 <u>전산관리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천지방국세청 <u>전산관리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u>화관리팀</u>----- -----. ② ----- ----- <u>정보화관리팀장</u>----- ----- ----- <u>정보화관리팀장</u>----- -----.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지방국세청 <u>전산</u>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정보</u>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명(전산주사 2명)을 제외한 별표 6의 2의 전산주사보 1명 및 별표 10의 2의 세무주사 2명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 한다.	
③·제3조 (생략)	③·제3조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22	923	+1
세무주사보	162	163	+1
전산주사보	67	66	-1
세무서기	31	32	+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세무서기보	<u>3,725</u>	<u>3,739</u>	+14
·	·	·	
·	·	·	
전산서기보	<u>36</u>	<u>43</u>	+7
운전서기보	<u>160</u>	<u>159</u>	-1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14</u>	<u>13</u>	-1
사무운영서기보	<u>340</u>	<u>321</u>	-19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20,412</u>	<u>20,413</u>	+1
일반직 계	<u>20,412</u>	<u>20,413</u>	+1
·	·	·	
·	·	·	
세무주사	<u>4,308</u>	<u>4,309</u>	+1
·	·	·	
·	·	·	
세무서기보	<u>3,725</u>	<u>3,739</u>	+14
·	·	·	
·	·	·	
전산서기보	<u>36</u>	<u>43</u>	+7
운전서기보	<u>160</u>	<u>159</u>	-1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14</u>	<u>13</u>	-1
사무운영서기보	<u>340</u>	<u>321</u>	-19
·	·	·	